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

2001. 6. 21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1년 6월 7일
- 회부일자 : 2001년 6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2001. 6. 15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홍기)

가. 제안이유

-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(2000.12.29)으로 제34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업무가 도지사에게 권한위임(2001. 7. 1.)됨에 따라,
- 석유판매업(부생연료유판매소) 등록 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석유판매업(부생연료유판매소) 등록신청 수수료 신설
 -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: 1건당 20,000원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 석유사업법시행령이 개정(2000. 12. 29)됨에 따라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수수료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

주요내용으로는 석유제품의 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 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1건당 20,000원으로 하는 것임.

⇒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수수료의 산출기초를 보면 등록시설의 현지확인에 따른 소요 비용 등이 계상되지 않고 있어 수수료 산정의 타당성과

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(2000. 12. 29)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시행일(2001. 7. 1)에 임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,

석유판매업의 위치 및 규모 등의 변경등록 시에는 신규 등록과 동일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

석유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,

향후 동 법 개정 등의 전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락”

5. 토론요지 : “생 락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의 제2호 나목중 세목(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 준	요 액
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 나.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(3) 석유판매업(부생연료유판매소) 등록신청	1건	20,000

부 칙

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2] 제 중 명 등 수 수 요 율 표 (단위:원)			[별표2] 제 중 명 등 수 수 요 율 표 (단위:원)		
구 분	기 준	요 액	구 분	기 준	요 액
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 가. (생략) 나. 상공 및 동력 자원 관계 (1) (생략) (2) (생략) <u>(3) (신설)</u>			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1) (현행과 같음) (2) (현행과 같음) <u>(3) 석유관매업(부생연 료유관매소)등록 신청</u>	1건	20,000

관 계 법 령 발 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석유사업법

제9조(석유판매업의 등록 등) ①석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~④ 생략

제31조(수수료)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(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을 제외한다)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생략

□ 석유사업법시행령

제34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제 6호의 업무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(이하“검사소”라 한다)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.

-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통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 (2001. 7. 1 시행)

②~⑤ 생략